

#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지침

- 차례 -

1. 총장선임의 원칙 .....	2
2. 총장선임 절차(도) .....	5
3. 총장 후보 초빙 .....	6
4.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8
4-1.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 .....	12
4-2. 정책평가단 평가 .....	13
5. 위임 .....	14

2019. 7. 1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1. 총장 선임의 원칙

## 가. 총장후보의 자격

### ■ 대학 설립정신의 수호

연세대학교 창립 정신에 투철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분

### ■ 인성

탁월한 리더십과 덕망을 갖추어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청렴하고 윤리적 흠결이 없는 분

### ■ 관리 및 소통 역량

원만한 대인관계와 뛰어난 균형감각, 친화력을 바탕으로 학내외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

### ■ 학문적 소양

높은 학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분

### ■ 대학행정 및 경영 역량

조직의 장으로서 경영 경험이나 교육행정 경험을 갖추고 뛰어난 경영 전략 사고가 가능하며 조직의 행정 및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 ■ 재정안정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금의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 ■ 과제 해결

연세대학교가 당면한 특정 핵심과제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분

### ■ 우리 법인 정관 및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43조

사립학교법 제22조, 제54조의 3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나. 총장후보의 심사기준

총장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총장 후보 대상을 검증·심사하여야 한다.

대학 설립정신의 수호	기독교 정신 계승 발전
	진리탐구와 국제적 역량에 바탕을 둔 연세대학교 정체성 함양
	연세대학교 창립정신의 현대적 목표 설정 및 시행
인성	리더십
	덕망 및 인품
	도덕성, 청렴성
관리 및 소통 역량	학내 구성원(교·직원, 학생, 부속기관 등)과 원활한 소통
	동문 관계 발전 및 지역사회 협력
	대학 자율성 확보 (정책 대응)
	법인 이사회와 원활한 소통
학문적 소양	학문적 연구 역량
	교육의 질 개선
대학행정 및 경영 역량	경영전략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인사 관리 능력
	교육행정 전문성
재정안정	교내 재정 건전화
	대외 모금 능력
대학의 현안 과제 해결	대학 평가 대응
	대학 구조 개선
	우수 교원 및 학생 확보 및 연구 교육

본 지침에서 정한 총장후보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학교법인은, 각 심사 단계마다, 위 심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증 항목 및 평가표를 제시한다.

## 다. 금지사항

### 1) 선거 및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연세대학교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거 및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로비활동의 예시

누구든지 자신 또는 특정 후보의 총장 선임을 위해 이사, 본 지침 상 위원, 평가단, 다른 후보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에게 다음의 로비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가) 관계자에게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교무위원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 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에게 총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위의 가)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 다) 관계자에게 자신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 라) 관계자에게 특정 타인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 마)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연설 · 벽보 부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 3)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재

- 가) 총장 초빙공고 이후 당해 공고에 따른 총장 선임 시까지, 누구든지 본 지침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를 접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교법인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나) 학교법인 및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위 금지행위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총장후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총장 선임 절차

총장 초빙 공고 및 등록

1. 본인 지원
  - 연세대학교 교원
  - 외부 인사
2. 추천 (임의사항)
  -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 추천
  - 서치펌에 의한 추천

↓ 이첩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검증 및 심사)

↓ 추천후보(4인~5인) 평가 의뢰

정책평가단 평가  
(주관 : 교수평의회)

- 전체 전임교원의 20%를 무작위 선정한 교수 및 합리적으로 추천한 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

↓ 결과 제출 (3인 이상)

이사회  
(총장 임명)

이사회는 심사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평판조회 보고를 활용할 수 있다.

### 3. 총장 후보 초빙

#### 가. 총장 초빙 공고

- 1) 학교법인은 총장후보의 자격 요건과 지원방법 등을 명시한 공고문(公告文)을 주요 일간지 및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2) 후보 추천에 의한 후보 초빙의 방식과 기간은 별도로 정하되,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총장후보 초빙의 방식

- 1) 본인 지원 : 총장 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추천을 득하여 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제출한다. 단, 전·현직 연세대학교 총장은 별도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 가)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 연세대학교 교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그 외 외부 인사 : 사회유지 3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임원 3인, 연세대학교 교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추천
  - 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별도의 초빙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 후보를 초빙할 수 있다.
  - 나) 학교법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3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추천 받아 총장 후보로 초빙할 수 있다.
- 3) 추천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다. 후보 등록

- 1) 등록 방법 : 학교법인은 지원 및 추천 서류를 접수하여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등록 명부에 등재한다.

## 2) 제출서류

가) 본인 지원의 경우 : 본인이 지원서 및 아래 서류 모두 제출. 단 연세대학교 전·현직 총장의 경우에는 ⑥ 서류를 제외한다.

- ①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학위증명서(최종 학력 증빙 자료)
- ④ 교인증명서
- ⑤ 서약서
- ⑥ 추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나) 추천의 경우 : 추천기관(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 전문기관)이 소정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피추천인이 위 가)의 ① ~ ⑤ 서류를 제출한다. 학교법인은 추천서 접수 후 지체없이 피추천인에게 후보 등록 수락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피추천인이 후보 등록을 거절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에서 제외한다. 단, 추천된 후보의 등록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이나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위 제출서류 외에 지원 정보의 확인 및 후보 검증 및 심사를 위한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가. 구성

#### 1) 위원 구성

구분	인원(명)	위촉 방법
① 교수대표	12	교수평의회 주관 / 추천
② 직원대표	2	연세직원노조협의회 추천
③ 교계대표	2	이사회
④ 동문대표	2	총동문회 추천
⑤ 기부자	1	이사회
⑥ 사회유지	3	이사회
⑦ 학생대표	2	총학생회 추천
<b>합계</b>	<b>24</b>	

※ 단, 교수평의회는 추천은 교무처 입회 하에 전체 전임교원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천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추천기관이 특별한 사정없이 학교법인이 추천을 요청한 날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3) 서기 및 실무간사

가) 서기 1인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나) 실무간사 1인 : 학교법인 직원 중에 파견한다.

4)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구성한다. 단, 적시에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이후 최초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5) 위원회 구성 후 결원 발생 시 위원회에서 총원 여부를 결정하되, 총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위원 선임 동의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나. 기능

- 1) 심사대상자의 추천 : 4.-1.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에 따른다.
- 2) 총장후보의 검증
- 3) 총장후보의 심사
- 4) 총장후보 추천
- 5) 필요 시 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다. 총장후보의 검증

- 1) 위원회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이첩받은 등록후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하여 심사 대상자를 정한다.
  - 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나) 상벌, 경력 및 자료 진위 등
  - 다)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
  - 라) 심사기준 가운데 검증 항목으로 정한 사항
  - 마) 기타 학교법인이 검증을 요청한 사항
- 2) 위원회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거나, 학교법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3) 총장후보들은 위원회 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원 대학 발전 계획안(A4용지 10매 내외 분량)과 기타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라. 총장후보의 심사

- 1) 위원회는 다음 단계에 따라 총장 후보를 심사한다. 단, 각 단계별로 검증을 병행할 수 있다.

1단계 위원회 평가	평가표에 따른 위원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는 비공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평가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2단계 정책평가단 평가	정책평가단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4-2.에 따른다.

2) 대학발전방안 소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후보들로부터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토론회는 공개할 수 있다.

**마. 총장후보 추천**

1) 위원회 결정으로 순위없이 4인 내지 5인의 추천후보(이하 '추천후보'라 한다)를 정한다.

2) 위원회는 교수평의회에 추천후보의 정책평가단 평가를 의뢰한다.

**바. 위원장과 위원의 역할**

1) 위원장

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단, 평가표에 의한 심사에는 참여하고, 표결 시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가) 임기 :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이사회에 총장후보 추천일(평가 의뢰일)까지

나) 본 지침에 따라 선임된 총장은 당해 총장 선임 절차의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교무위원 이상 보직에 선임 또는 연임(유임) 발령하지 아니한다.

4) 위원 제척사유

가) 등록된 총장후보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위원이 총장후보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 5) 위원의 의무

가)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

나)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위원은 총장후보의 검증 및 심사 과정에서 총장후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원은 기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 위원회 소집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회의 개최 사전 통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아.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1) 의사 정족수 : 위원정수 과반수

2)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 자. 회의록 서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가 자필서명한다.

## 4-1.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

### 가.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의 목적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초빙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총장후보 초빙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나. 구성

#### 1) 위원 구성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임명한다.

가) 교수대표 위원 중 2명

나) 동문대표 위원 2명

다) 사회유지 위원 중 1명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3)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추천위원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다. 기능 : 연세대학교 총장후보 심사대상자 추천

### 라. 추천방법

1)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외부 인사를 초빙하되, 위원 당 피추천인은 3인 이하로 하고,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추천은 위원당 1인으로 한정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하여 소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를 정한다.

### 마. 추천 후보의 등록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초빙한 후보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한다. 단, 추천위원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4-2. 정책평가단 평가

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심사를 완료 시, 추천후보에 대한 자료를 교수평의회에 전달하여 총장 후보에 대한 정책 평가를 의뢰한다. 이 때 학교 법인은 평가단에 평가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나. 평가단 구성의 방식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가단은 평가일 전 24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성 비율에 따라 추천하여 정하고, 평가일까지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	교원	직원	학생
구성 비율	85% (교원의 20%)	10% (교수평가단의 약 12%)	5% (교수평가단의 약 6%)
선정 방식	교무처 입회 하 전체 전임교원의 20% 무작위 추천	연세직원노조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천	총학생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천

단, 교수평의회는 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세직원노조협의회, 총학생회와 구성 비율에 한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만약 본 지침에서 정한 평가의 방식과 절차를 벗어나 평가단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사회는 정책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후보 심사의 판단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교수평의회는 필요 시 학교발전계획서 등 자료를 배포하거나, 총장 후보 정책 발표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대상 후보들과 협의하여 교수평의회가 정하여 진행한다. 단, 그 진행과정에 선거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본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투표 기타 선거 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선거 행위가 개입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정책평가단 평가 결과를 후보 심사의 판단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마. 교수평의회는 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의뢰 시 정한 기한까지, 3인 이상 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추천 후보의 평가 순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최종 추천후보 수가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미달 후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총원할 수 있다.
  
- 바. 만약, 교수평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기한 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학교법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바. 교수평의회 및 정책평가단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평가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 교수평의회는 추천위원회 및 학교법인에 평가 진행을 위하여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평가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5. 위임

총장 선임과 관련해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위임한다.